The PLATINUM

# 쌍용 더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105이며, 공고문 및 분양관련 내용은 쌍용 더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 홈페이지(https://쌍용더플래티넘동래아시아드.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2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6.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I 사업주체 및 시공사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 회사명 | 온천제2공영아파트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쌍용건설(주) |
| 법인등록번호 | 180171-0032021 | 110111-0220395 |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북로 38, 2층(사직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구분 | 감리회사명 | 감리금액 (VAT 포함) |
|---|---|---|
| 건축 | ㈜플랜에이건축사사무소 | 1,360,359,000원 |
| 전기 | ㈜세종기술단 | 319,000,000원 |
| 통신 | | 77,000,000원 |
| 소방 | | 297,000,000원 |

## II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5.07.07.(월) | 25.07.08.(화) | 25.07.09.(수) | 25.07.16.(수) | 25.07.19.(토) ~ 25.07.22.(화) | 25.07.28.(월) ~ 25.07.30.(수) |
| 방법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견본주택 |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 (PC·모바일) 청약홈 | ■ 쌍용 더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 견본주택<br>(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283) | |

## I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과-27186 (2025. 06.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370-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4층 3개동, 총 271세대 중 일반분양 137세대
[ 특별공급 75세대(기관추천 7세대, 다자녀가구 23세대, 신혼부부 32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9세대) 포함 ]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계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2025000105 | 01 | 059.7720A | 59A | 59.7720 | 20.6347 | 80.4067 | 56.3900 | 136.7967 | 26.6278 | 19 | 1 | 3 | 4 | 0 | 1 | 9 | 10 | 2 |
| | 02 | 059.9740B | 59B | 59.9740 | 21.4613 | 81.4353 | 56.5806 | 138.0159 | 26.9684 | 48 | 2 | 8 | 13 | 1 | 4 | 28 | 20 | 4 |
| | 03 | 059.9974C | 59C | 59.9974 | 21.3586 | 81.3560 | 56.6026 | 137.9586 | 26.9422 | 7 | 1 | 1 | 1 | 0 | 0 | 3 | 4 | 0 |
| | 04 | 059.9598E | 59E | 59.9598 | 24.4844 | 84.4442 | 56.5672 | 141.0114 | 27.9649 | 1 | 0 | 0 | 0 | 0 | 0 | 0 | 1 | 0 |
| | 05 | 084.8955A | 84A | 84.8955 | 27.7508 | 112.6463 | 80.0920 | 192.7383 | 37.3044 | 11 | 1 | 2 | 3 | 1 | 1 | 8 | 3 | 2 |
| | 06 | 084.9453B | 84B | 84.9453 | 28.2181 | 113.1634 | 80.1394 | 193.3028 | 37.4756 | 34 | 1 | 6 | 7 | 1 | 2 | 17 | 17 | 2 |
| | 07 | 084.9891C | 84C | 84.9891 | 29.1559 | 114.1450 | 80.1811 | 194.3261 | 37.8007 | 17 | 1 | 3 | 4 | 1 | 1 | 10 | 7 | 2 |
| | 합계 | | | | | | | | | 137 | 7 | 23 | 32 | 4 | 9 | 75 | 62 | 12 |

※ 59D, 59F, 84D 주택형의 경우 조합원 분양 완료되어 일반분양 공급 세대수가 없으므로 미표기 하였습니다.
※ 주택규모 표기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2022.03.17.)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총 51세대(다자녀 특별공급 2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8세대)를 아래와 같이 선별(당첨자 발표일[2025.07.16.]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고, 공급금액(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하여 공급합니다.

| 구분(약식표기) | | 59A | 59B | 59C | 59E | 84A | 84B | 84C | 합계 |
|---|---|---|---|---|---|---|---|---|---|
| 「아이·맘부산플랜」 적용 세대 | 다자녀 가구 | 3 | 8 | 1 | 0 | 2 | 6 | 3 | 23 |
| | 신혼부부 | 4 | 9 | 1 | 0 | 3 | 7 | 4 | 28 |
| | 합계 | 7 | 17 | 2 | 0 | 5 | 13 | 7 | 51 |

- 위 표와 같이 각 유형별·타입별 「아이·맘부산플랜」 적용 세대가 배정이 되고 배정된 세대수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으며, 「아이·맘부산플랜」 적용 세대수보다 당첨자 수가 많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중 당첨세대(정당계약일)에 한하여 공급되며, 이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선착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 혜택은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주택형(주거전용면적 기준) | 약식표기 | 공급세대수 | 동 라인 | 층 | 세대수 | 공급금액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금(5%) 계약시 | 계약후 30일 이내 | 중도금(60%) 1회(10%) 2026.02.11 | 2회(10%) 2026.08.11 | 3회(10%) 2026.12.11 | 4회(10%) 2027.08.11 | 5회(10%) 2027.12.11 | 6회(10%) 2028.03.11 | 잔금(35%) 입주지정일 |
|---|---|---|---|---|---|---|---|---|---|---|---|---|---|---|---|---|---|
| 059.7720A | 59A | 19 | 103동 1호,2호 | 1층 | 1 | 114,564,070 | 398,435,930 | 513,000,000 | 10,000,000 | 15,65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179,550,000 |
| | | | | 2층 | 2 | 114,564,070 | 416,435,930 | 531,000,000 | 10,000,000 | 16,55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185,850,000 |
| | | | | 3-4층 | 4 | 114,564,070 | 439,435,930 | 554,000,000 | 10,000,000 | 17,700,000 | 55,400,000 | 55,400,000 | 55,400,000 | 55,400,000 | 55,400,000 | 55,400,000 | 193,900,000 |
| | | | | 5-10층 | 8 | 114,564,070 | 461,435,930 | 576,000,000 | 10,000,000 | 18,800,000 | 57,600,000 | 57,600,000 | 57,600,000 | 57,600,000 | 57,600,000 | 57,600,000 | 201,600,000 |
| | | | | 11-15층 | 4 | 114,564,070 | 476,435,930 | 591,000,000 | 10,000,000 | 19,55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206,850,000 |
| 059.9740B | 59B | 48 | 101동 2호,3호 102동 2호,3호 | 1층 | 3 | 116,029,627 | 376,970,373 | 493,000,000 | 10,000,000 | 14,65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49,300,000 | 172,550,000 |
| | | | | 2층 | 3 | 116,029,627 | 393,970,373 | 510,000,000 | 10,000,000 | 15,5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178,500,000 |
| | | | | 3-4층 | 5 | 116,029,627 | 416,970,373 | 533,000,000 | 10,000,000 | 16,650,000 | 53,300,000 | 53,300,000 | 53,300,000 | 53,300,000 | 53,300,000 | 53,300,000 | 186,550,000 |
| | | | | 5-10층 | 14 | 116,029,627 | 439,970,373 | 556,000,000 | 10,000,000 | 17,8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55,600,000 | 194,600,000 |
| | | | | 11-15층 | 10 | 116,029,627 | 457,970,373 | 574,000,000 | 10,000,000 | 18,700,000 | 57,400,000 | 57,400,000 | 57,400,000 | 57,400,000 | 57,400,000 | 57,400,000 | 200,900,000 |
| | | | | 16층 이상 | 13 | 116,029,627 | 474,970,373 | 591,000,000 | 10,000,000 | 19,55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206,850,000 |
| 059.9974C | 59C | 7 | 101동1호, 102동1호 | 11-15층 | 7 | 115,916,640 | 475,083,360 | 591,000,000 | 10,000,000 | 19,55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59,100,000 | 206,850,000 |
| 059.9598E | 59E | 1 | 103동1호 | 11-15층 | 1 | 120,316,730 | 559,683,270 | 680,000,000 | 10,000,000 | 24,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238,000,000 |
| 084.8955A | 84A | 11 | 101동 4호,5호 102동 4호,5호 | 1층 | 2 | 160,499,294 | 635,500,706 | 796,000,000 | 10,000,000 | 29,8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79,600,000 | 278,600,000 |
| | | | | 5-10층 | 5 | 160,499,294 | 736,500,706 | 897,000,000 | 10,000,000 | 34,85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313,950,000 |
| | | | | 11-15층 | 1 | 160,499,294 | 769,500,706 | 930,000,000 | 10,000,000 | 36,5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325,500,000 |
| | | | | 16층 이상 | 3 | 160,499,294 | 792,500,706 | 953,000,000 | 10,000,000 | 37,650,000 | 95,300,000 | 95,300,000 | 95,300,000 | 95,300,000 | 95,300,000 | 95,300,000 | 333,550,000 |
| 084.9453B | 84B | 34 | 101동 2호,3호 102동 2호,3호 103동 3호,4호 | 1층 | 2 | 161,236,062 | 614,763,938 | 776,000,000 | 10,000,000 | 28,800,000 | 77,600,000 | 77,600,000 | 77,600,000 | 77,600,000 | 77,600,000 | 77,600,000 | 271,600,000 |
| | | | | 2층 | 2 | 161,236,062 | 641,763,938 | 803,000,000 | 10,000,000 | 30,150,000 | 80,300,000 | 80,300,000 | 80,300,000 | 80,300,000 | 80,300,000 | 80,300,000 | 281,050,000 |
| | | | | 3-4층 | 4 | 161,236,062 | 677,763,938 | 839,000,000 | 10,000,000 | 31,950,000 | 83,900,000 | 83,900,000 | 83,900,000 | 83,900,000 | 83,900,000 | 83,900,000 | 293,650,000 |
| | | | | 5-10층 | 12 | 161,236,062 | 713,763,938 | 875,000,000 | 10,000,000 | 33,75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306,250,000 |
| | | | | 11-15층 | 6 | 161,236,062 | 740,763,938 | 902,000,000 | 10,000,000 | 35,100,000 | 90,200,000 | 90,200,000 | 90,200,000 | 90,200,000 | 90,200,000 | 90,200,000 | 315,700,000 |
| | | | | 16층 이상 | 8 | 161,236,062 | 768,763,938 | 930,000,000 | 10,000,000 | 36,5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93,000,000 | 325,500,000 |
| 084.9891C | 84C | 17 | 101동1호, 102동1호 | 1층 | 2 | 162,634,653 | 604,365,347 | 767,000,000 | 10,000,000 | 28,35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268,450,000 |
| | | | | 2층 | 2 | 162,634,653 | 631,365,347 | 794,000,000 | 10,000,000 | 29,7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277,900,000 |
| | | | | 3-4층 | 4 | 162,634,653 | 667,365,347 | 830,000,000 | 10,000,000 | 31,5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83,000,000 | 290,500,000 |
| | | | | 5-10층 | 9 | 162,634,653 | 702,365,347 | 865,000,000 | 10,000,000 | 33,25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86,500,000 | 302,750,000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우리은행 | 1005-804-537979 | 온천제2공영아파트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 상기 납부계좌에 1,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구조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절반씩 부담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IV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유의사항 및 신청자격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 (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적용 가능 |
| 제3항 (출산특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br>*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br>-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br>-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br>-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br>→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br>-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br>-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r>-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
| 공급기준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해야하며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br>※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br>구분 / 처리방법<br>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br>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br>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br>■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br>■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 대상자 | ■ 기관추천 :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분<br>■ 다자녀 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분<br>■ 신혼부부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br>-「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r>■ 생애최초 :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br>※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br>-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br>-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br>*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br>-「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r>-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분<br>■ 노부모부양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br>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br>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일반공급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br>■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br>■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br>■ 전용면적 85㎡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br>■ 가점 산정기준 항목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사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4.03.25. 시행)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1순위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V 청약 신청방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당사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br>-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br>-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br>-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VI 발코니 확장금액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 약식표기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10%) 계약체결시 | 잔금(90%) 입주시 |
|---|---|---|---|
| 59A | 8,000,000 | 800,000 | 7,200,000 |
| 59B | 8,000,000 | 800,000 | 7,200,000 |
| 59C | 8,000,000 | 800,000 | 7,200,000 |
| 59E | 8,000,000 | 800,000 | 7,200,000 |
| 84A | 12,000,000 | 1,200,000 | 10,800,000 |
| 84B | 12,000,000 | 1,200,000 | 10,800,000 |
| 84C | 12,000,000 | 1,200,000 | 10,80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금액(계약금, 잔금) | 우리은행 | 1005-804543992 | 온천제2공영아파트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